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22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김예지·백종헌·김선교

김미애 · 한지아 · 김승수

최형두 · 임종득 · 최수진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.

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,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.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법률상 근 거의 부재로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지속 지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임.

이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,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과 관련된

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5항,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		
책무 등) ① ~ ④ (생 략)	책무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		
	음)		
<u> <신 설></u>	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		
	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		
	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		
	노력하여야 한다.		
제10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	제10조(재단의 사업) ①	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의2.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		
5. ~ 12. (생 략)	5. ~ 12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